

의안번호	2218231
의 퇴 인	김정재 의원
회 답 일	2026. 4. 14.
추 계 번호	26F205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0조의35 (국가전략기술사업을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)	○ 국가전략기술사업 영위 기업의 국내 생산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※ 국가전략기술사업: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 - 적용요건: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다음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(대상 제품)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청정수소 관련 제품, 전기차·수소차, 바이오의약품(백신 포함) - 공제한도: 해당연도 법인세·소득세의 10% - 공제금액, 수량 보고·신청 절차 등: 시행령 위임사항 ○ 국가전략기술사업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- 공제금액, 요건, 절차 등: 시행령 위임사항 ○ 적용기한: 2030.12.31.	
2	안 제144조 제5항 (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인 기업이 과세연도에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국내생산 세액공제 한도(법인세·소득세의 10%)를 초과하여 발생한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이월공제 허용 - 이월공제기간: 10년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0조의35(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44조 제5항 (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사업 영위 기업의 국내 생산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 세액공제, 미공제금액의 10년간 이월공제 특례 및 해당 기업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0조의35, 제144조 제5항 신설)
 - 안 제100조의35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(이하 ‘국가전략기술사업’)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일정 요건에 따라 생산하는 경우, 해당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
 - 공제대상 기업: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 - 적용요건
 - ①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해당 재화를 제조
 - ②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판매
 - ※구체적인 요건, 생산·판매 수량 보고방식, 공제방식, 공제금액 등: 시행령에 위임
 -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10%
 - 적용기한: 2030.12.31.
 - 안 제144조 제5항은 국가전략기술 생산세액공제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금액이 발생한 경우,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특례 신설
 - 과세연도에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국내생산 세액공제 한도(법인세·소득세의 10%)를 초과하여 발생한 미공제금액 대상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관련된 생산의 비용구조와 과세정보를 결합하여야 하나, 공제금액, 요건, 절차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 중 공제금액, 생산공제 산정방식, 생산·판매 수량 보고와 같은 절차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공제방식을 구체화할 수 없음
- 또한,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의 생산여부, 국내 판매여부 등 요건을 만족하는 비중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향후 세액공제를 추정할 수 없음
-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규모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, 미공제금액 발생에 따른 이월공제로 인한 세수 변동 역시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